



###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공익성·진실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서울중앙지법은 11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 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었다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이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의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

실성이 인정된다”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형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검찰이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자신들이 간첩처럼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 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명예훼손 사건 최근 2년 사이 50% 급증, “근절대책 필요”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2년 사이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6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 1심 사건은 2007년 1,853건에서 2008년 2,265건, 2009년 2,710건으로 증가해 2년 동안 46.2%나 증가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기소된 인터넷 명예훼손 1심 사건은 2007년 380건에서 2008년 422건, 2009년 467건으로 같은 기간 22.8%가 늘어났다.

올해 명예훼손의 사건의 경우는 6월까지 일반 명예훼손이 1,369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224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

다.

조사기간 전체 처벌현황을 보면 벌금 등 재산형이 일반 명예훼손 사건의 54.6%, 인터넷 명예훼손의 50.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무죄나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도 25%에 달했다.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프랑스 법원, “구글 ‘자동완성’ 기능 명예훼손 해당”

프랑스 법원이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 회사 측과 구글 최고경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법률사이트 리갈리스넷이 지난 9월 25일 밝혔다.

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구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강간범’과 ‘악마송배자’라는 단어가 검색어 자동완성 목록에 나타나고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인터넷 상에서 강간범, 악마송배자 등과 함께 검색되어 왔다.

법원은 구글에 상징적인 의미의 손해배상금 1유로를 원고 측에 지불하라고 결정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

치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 측의 소송비용 5,000유로에 대해서도 구글이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동완성 기능은 단지 가장 보편적으로 입력된 단어를 나타낼 뿐 구글이 직접 자동완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구글차이나는 지난 7월 1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동완성 서비스를 중지했다. 구글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거부하고 지난 3월부터 구글차이나로 접속하는 트래픽을 구글홍콩으로 자동 전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중국의 이번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완성 기능을 차단했다.

## 경찰의 부당행위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해당 안 돼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원집행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해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손 모 경위에게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수갑을 채우라는 명령에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이며, 사건 경위를 살펴볼 때 부당한 공무원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경위는 난동이나 자해 우려 때문이 아니라 김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서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도주방지나 신체, 생명의 방어, 공무원집행에 대한 저항 억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쓰게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중 선거일 180일 이내에 특정정당의 명칭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PD 수첩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일부 허위사실 인정되나 고의성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통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미국인 아레스 빈슨 씨의 사망원인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내용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달라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

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에의동향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 도쿄지법, 수사기관 간부 등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아니라면 엄격한 입증필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고심 심리 중에 있는 오리하라 쇼지(織原城二)가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를 상대로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지난 10월 8일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55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리하라 쇼지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 중에 있는 형사피고인이며, 요미우리 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위장 결혼을 한 호주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상고 중에 있으므로, 오리하라 피고자

사망에 관여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2건의 기사가 경시청 간부나 수사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기는 했으나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입증취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신문협회보 2010년 10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1년 1월 28일자 조간에서 오리하라가 살인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 여성과 위장 결혼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2001년 4월 8일자 신문에는 형사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약 4,800개가 피고인의 자택에서 압수되었고, 테이프에는 400명 이상의 여성이 촬영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일본 문예가협회 등 3개 단체, 디지털 전송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일본 문예가협회, 사진저작권협회, 잡지협회 등 3개 단체는 기사, 사진 등의 디지털 전송 시에 적용할 저작권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9월 21일자 일본신문협회보가 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작가, 사진가 등 관리자가 간행물의 간행빈도(頻度)에 따라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출판사에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리 양도의 기간은 주간지와 격주간지는 1개월, 월간지와 격월간지 2개월, 계간지 3개월이며, 이

기간 중에는 기사 등을 디지털 전송해도 추가적인 원고료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권리 양도 기간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원고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단행본 간행이 예정되어 있는 장편소설이 문예지에 전문(全文) 게재되는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권리자나 출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3개 단체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적재산권 법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해야”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2010년 9월 8일 동화(動畵) 투고(投稿) 사이트 「브레이크」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해당 사이트 운영회사인 「저스트온라인」을 상대로 배신(配言) 금지명령과 함께 약 12억2,8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신의 금지명령과 함께 원고에 8,90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 도쿄지법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 항

소를 기각했다고 신문협회보(10월 12일자)가 보도했다.

또한 오사카지방법원은 2010년 9월 9일,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되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진작가들이 「스포츠닛폰」을 상대로 5,68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사진 게재에 대한 허락은 합리적인 기간 내의 1회에 한하여 적용될 뿐, 2차 사용에 대한 허락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55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사진작가들은 1심 법원의 결정액이 현저히 낮다며 항소했다.

## 일본 고베지법, “공무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 보호는 제한될 수 있다”

일본 고베지방법원은 체벌을 가한 교사의 이름과 근무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효고현(兵庫縣)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베시의 한 남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무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효고현교육위원회는 교원 정보 비공개 결

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고 신문협회보(10월 19일자)가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07년 1월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하여 효고현교육위원회에 사고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효고현은 교원의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미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효고현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일본 방송사들 “뉴스영상 보도 목적 외 사용 안 된다”

뉴스영상이 법원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일본 방송사들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문협회보(2010년 8월 31일자)에 따르면 요코하마지방법원은 해상자위대 자위관 2명의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뉴스자료를 합법한 증거로 채택했다.

제출된 증거는 NHK, TBS, 日本텔레비전의 뉴스영상으로 지난 2008년 2월 치마현 보소반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타고’와 어선 ‘쇼도쿠마루호’의 충돌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자위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영상을 합법한 증거로 채택하자 해당 방송사들은 방송 내용을 보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영상은 사고 이후 쇼도쿠마루호 승무원들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장면을 담고 있으며, 변호인은 증거물에 대해 “승무원들의 당시 발언과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방송 목적 이외에 취재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취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한 후 대응하겠다” 밝혔다.

## 주 의회와 법원, '정부가 맺은 화해 계약도 공공기록으로 봐야'

최근 켄터키와 네브라스카 주 의회와 법원은 정부기관이 소송 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들인 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소위 '열린 정부'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봄)에 의하면, 켄터키 주 대법원은 지난 3월 켄터키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에 다른 학교에 임용되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학교 측과 교사가 화해한 내용을 당국이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Central Kentucky News-Journal」은 정부의 공공 기록 공개법에 따라 교사와 학교 간 합의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프라이버시 면제 조항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서에 비공개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기록임이 명백하므로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 간 화해로서 지급된 제반 비용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켄터키 주 교육구에서 지출되었으므로 해당 화해 내용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내용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News-Journal」의 Rebecca Cassel은 해당 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3년에 걸친 법적 투쟁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공적인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assel은 이번 소송이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법원이 만약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지역사회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부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비밀에 붙이려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켄터키 주 연합통신사 Thompson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들의 분쟁해결 접근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많아질수록 공공기관들이 이런

사안을 숨기려는 시도가 점차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알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성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근로자와 주택건설국 간의 비공개 화해조항을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공적인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 중이다. 네브라스카 주의 열린 정부 옹호자들은 정부기관과의 화해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네브라스카의 Dave Heinman 주지사는 정부기관이 분쟁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 대중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록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마하의 무소속 출신 Beau McCoy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시장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에게 합의금 28만 달러가 비밀리에 건네져 논란이 되었던 작년 사건에 뒤이은 것이다. 이에 대해 주 교육구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McCoy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주 교육구가 공공기록에 대한 법조항을 잘못 이해하여 교사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감독행정을 받지 않으려고 느슨한 법조항을 악용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McCoy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반대한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가 화해 기록을 문서로 남기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반대론자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었고, 우리가 낸 세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예산이 넉넉지 않은 시점에 이 법이야말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나중에 화해의 내용이 모두 공개될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분쟁 해결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FCC, 인터넷 규제를 위한 제3의 길을 찾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The News Media & The Law(2010, 봄)에 의하면, 콜롬비아 주 고등법원은 Comcast 대 FCC 사건에서 현 커뮤니케이션법상 FCC는 Comcast사로 하여금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허용케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FCC의 Julius Genachowski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에 주어진 보조적 제재 효력만을 계속 유지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터넷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대신 세계정상급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맞춤형 접근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을 처음부터 재정의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이러한 방향 정립을 '제3의 길'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했으나, 현재 위원회의 권한이 미치는 일부 법 조항에서 인터넷서비스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방안보다는 한층 손쉬운 안으로 보인다.

하버드 로스쿨 '인터넷과 사회를 위한 버크만 센터'의

Yochai Benkler 부소장은 "위원회의 이번 방침은 법적으로 견고한 권한을 획득함과 더불어 그러한 권한을 한정적으로 사용할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선호해 망 중립성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인터넷에 대한 제재권한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 선결 과제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나 제한을 전혀 두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없는 완전 개방형 인터넷 사회를 선호하는 측에서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특별 대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있었던 Comcast 사건에서는 통신사업자가 파일공유사이트인 BitTorrent의 접속을 막은 사실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망 중립성 보호 차원에서 Comcast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고등법원 합의부에서는 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이번 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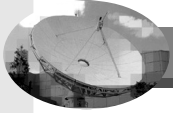
## 위스콘신 주, 취재원 보호법 통과시켜

The News Media & The Law(2010, 봄)에 의하면, 지난 5월 18일 위스콘신 주 Jim Doyle 주지사는 언론사가 취재원과 취재된 정보를 밝히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재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 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미국 내 관련법 중 39번째로 제정되었으며,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함께 보도되지 않은 취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도 부여했다. 해당법 조문에 의하면 '언론인'이란 인쇄매체, 책, 통신사, 통신망, 방송, 케이블, 위성,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뉴스를 취재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일컫는다. 최근 캔자스 주의 취재원보호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스콘신 주에서는 온라인만을 이용하여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론인을 '공중에게 뉴스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사

업자나 기관을 위해 뉴스를 수집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새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건의 경우 보도되지 않은 취재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 요청자가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취재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그 정보가 사건과 매우 밀접하고 필수적이며, 다른 대체적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공익성에 대한 조항은 일부 법원에서 적용을 한 바 있을 뿐 취재원보호법에서는 거의 새로운 개념이다. 새 법은 또한 언론인과의 거래와 관련해 정보를 얻려는 의도에서 기자가 아닌 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조항은 뉴스 취재 과정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다.



## 트위터, 영국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가디언지의 Evans Harris 기자에 따르면 2010년 11월 11일은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날은 바로 영국의 돈카스터 지방법원이 Paul Chambers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한 형사처벌 취소소송을 기각한 날이다.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회계사로 일하던 Paul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거주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로빈후드 공항은 폐쇄되었고, 비행기를 타지 못한 Paul은 약 6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트위터에 “젠장! 로빈후드 공항이 폐쇄되었군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면 공항에다 X를 모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공항을 하늘 높이 폭파시킬겁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로빈후드 공항과 지역 경찰 측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트위터에 게시한 글이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만하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관은 체포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농담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 글을 봤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 천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언어나 인신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리트윗 기능을 통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다른 곳에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누구에게 해당 메시지 작성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디언의 Evan Harris 기자는 트위터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의 의견과 관점을 온라인에 반영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어떤 의견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오프라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극단적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트위터에 게시된 글로 인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근래 들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영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트렌드라고 비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트위터 감시 전담 부서가 생겼다는 루머가 퍼질 만큼 트위터 관련 사건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보수당 소속의 버밍엄 시의원인 Gareth Compton이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칼럼니스트이자 인권운동가인 Yasmin Alibhai-Brown의 <Radio 5 Live> 코멘트에 대해 트위터에 남긴 글로 인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Radio 5 Live>에서 Yasmin은 카메론 영국 총리가 중국에서 강연한 내용에 대해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Gareth Compton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누가 제발 Yasmin Alibhai-Brown을 돌로 쳐서 죽여주세요. 축복받을 겁니다. 정말로요...”라는 글을 남겼고, 이를 ‘살인 고무 행위’로 간주한 Yasmin의 고소로 인해 Gareth는 구속되었다. 그는 또한 소속 정당인 보수당으로부터도 무제한 자격 정지를 받았다. 물론 이 사건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우과 정치인이 무슬림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Evan Harris는 이에 대한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그의 트위터 글의 마지막에 포함된 해쉬태그 ‘#R5L’은 분명 그의 트위터 글이 <Radio 5 Live>에 대한 반응으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트위터 글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또 다른 부분은 바로 개인의 의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Evan Harris는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Compton이 자신의 공격적인 글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Alibhai-Brown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공격성은 더욱 잔인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육체적 손상에 버금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에서 종교, 인종, 성적 취향 등 공격받기 쉬운 이슈에 노출된 소수자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은 오프라인에서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회장인 Lalit Modi가 뉴질랜드 크리켓 선수인 Chris Cairns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다. 뉴질랜드 크리켓 선수가 인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크리켓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는 Lalit Modi를 명예훼손죄로 영국 법원에 고소하였다. 고소의 이유는 Modi 회장이 트위터를 통해 Chris의 크리켓 경기 운영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odi 회장은 이번 고소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로 그는 바로 영국에서는 자신의 트위터를 보는 이가 아무

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명예훼손 사건의 대가로 불리는 Tugendhat 판사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두 명의 자문위원을 임명하여 트위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해 온 현 보수 - 자민당 정부 출범 이후 공공롭게도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심지어 친 보수 성향의 The Times 역시 현행 명예훼손 관련법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인 트위터에 대한 검열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의 증가는 조만간 표현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저항 운동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 (ISPA)'는 11월 19일자 성명을 통해, 인터넷 공급업체의 95%를 대표해 카메론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개 서한에는 최근 영국에서 대두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된 글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는 사건들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여기에는 Yahoo와 AOL(UK), Facebook 등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 대법원, “사실적 기반에서 작성된 논평에 대한 공정성 여부는 공공이 판단하도록 해야”

2010년 12월 1일, 영국 언론법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꿀 판결이 있었다. 영국 대법원의 Eady 판사는 'The Gillettes and agent Jason Spiller' 사건에서 '공정정보'(Fair comment)의 잣대가 아닌 '사실정보'(Honest comment)의 관점에서 피고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영국 언론법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으로 향후 언론사들과 유명인들 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의 원고는 'The Gillettes'와 'Saturday Night at the Movies'의 뮤지컬 배우들로 이들은 지난 2004년 해당 뮤지컬을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올리려 했던 에이전트, Jason Spiller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 그들은 애초 계약에 의해

공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Jason Spiller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후 그가 에이전트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뮤지컬이 공연되기에는 여전히 전문적이지 못하다(not professional enough)고 밝혔다. 해당 포스팅은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6주간 게시되었고, 이후 배우 노조 Equity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웹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 해당 게시물이 다시 사이트에 올라왔고 2008년 4월이 되어 서야 원고 측 변호인의 요구에 의해 다시 삭제되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피고 측은 '사실정보 혹은 공정정보의 보호'라는 틀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2009년 4월 27일, 첫 공판을 약 한 달여 앞 둔 시점에서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주장한 '공정 논평의 보호'라는 언급을 삭

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첫 번째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 측이 주장한 '공정 논평의 보호 삭제'는 이유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멘트가 공정 논평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는 이유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 항소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 측은 마지막 대법원에 항소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공정한 논평'에서의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사실 19세기에 책이나 공연에 등장하는 예술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공정한 논평'에 관한 보호법의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오용되어 왔으며, 그 자체가 '불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법원 판결을 담당한 Lord Walker는 판결문을 통해 "기술의 변화와 발달로 인해 기존의 법이 수정되고 대체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 미디어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진보는 명백히 과거 책이나 신문에만 국한되었던 의견 개진의 장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게시하는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더 이상 '공정한 논평'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은 더 이상 법적 효력과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졌으며, 따라서 '사실적 논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인터넷에 게시되는 논평들 중 상당수가 보잘 것 없는 수준이거나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가벼운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때때로 그것들은 명예훼손법에 상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 논평이나 기사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것의 공정성 여부는 공공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여러가지 문제로 논쟁에 휩싸인 영국 명예훼손 관련법 재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들어 유명인들의 부적절한 사생활이나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휘말려서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언론사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언론자유 가치를 더 높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가디언은 「사실적 논평이여 영원하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공정보도 원칙이 대법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사실상 보도 원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타임즈는 공공의 알권리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이며,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 영국, 명예훼손 고소사건 3년 전에 비해 50% 증가

영국 대법원(The Royal Courts of Justice)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정 고소 사건이 3년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변인은 보도 자료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총 298건의 명예훼손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259건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한 것이며,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간지 가디언은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는 자극적인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온라인 옐로우 저널리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보다 영국의 허술한 명예훼손 관련법으로 인해 소위 '명예훼손 소송관광'을 하러 영국 대법원을 찾고 있는 영국인과 외국인의 증가가 더 큰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대형 로펌 중 하나인 Reynold Porter

Chamberlain(이하 RPC)는 "지난 몇 년간의 명예훼손 사건을 살펴보면, 분명 불필요한 소송과 그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점차 증가해 온 것이 분명하다. 런던 외곽에 신장개업한 법률 회사들 중 상당수는 명예훼손 관련 고객을 찾아 나서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유명인들과 언론사가 얽힌 명예훼손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법률회사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에 영국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관광'을 줄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측면에서 명예훼손 관련법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아일랜드 대법원, 언론에 전직 임원의 사생활을 폭로한 회사 측에 1천만 유로(한화 약 160억 원) 배상판결

아일랜드 대법원은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에 대해 1천만 유로(한화 약 1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채굴 회사인 Kenmare Resources가 전직 임원이었던 Donal Kinsella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모잠비크에서 근무하던 Kinsella가 일종의 풍류병 증세와 같이 별거벗은 채 여성 직장 동료의 침실에 나타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직장을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건의 정황을 추측해 볼 때,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극히 적고, 여러 가지 정황상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Kenmare Resources 측이 원고인 Kinsella에게 9백만 유로의 실질적 배상금과 1백만 유로의 정신적 배상금을 합한 1천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아일랜드 법원 역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Kenmare 측의 변호사인 Bill Shipsey는 '리히터 규모로도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최고 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 지급 유예를 신청했다. 대법원 측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에 동의했지만, 보상액 중 일부인 50만 유로(한화 약 8억 원)는 즉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